의안번호	2220931
의 뢰 인	서천호 의원
회 답 일	2026.10.13.
추계번호	26F43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27년 1,791.7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8,9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919.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97.0억원(연평균 91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9.1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5억원(연평균 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319.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597.0억원(연평균 31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539.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2,697.0억원(연평균 53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4.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22.0억원(연평균 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재산세 등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919.4	−919.4	−919.4	−919.4	−919.4	−4,597.0	−919.4
안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9.1	−9.1	−9.1	−9.1	−9.1	−45.5	−9.1
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319.4	−319.4	−319.4	−319.4	−319.4	−1,597.0	−319.4
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3항	−539.4	−539.4	−539.4	−539.4	−539.4	−2,697.0	−539.4
안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	−4.4	−4.4	−4.4	−4.4	−4.4	−22.0	−4.4
합계	−1,791.7	−1,791.7	−1,791.7	−1,791.7	−1,791.7	−8,958.5	−1,791.7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에 대해 취득세 감면(안 제6조제1항)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감면(안 제6조제2항)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	
2	안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기계에 대해 취득세 면제(안 제7조제1항)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7조제2항)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	
3	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임야, 양잠 및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산시설, 창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11조제1항) ○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안 제11조제2항)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	
4	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3항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취득 ·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14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안 제14조제3항)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	
5	안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 · 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14조의3)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개정안) 2031.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
2	안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
3	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	○	-
4	안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3항	○	-
5	안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공통 사항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으로 설정함

나. 자경농민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조제1항 및제2항)

❑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연평균 감면실적: 919.4억원

다.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제1

항 및 제2항)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감면실적: 9.1억원

라.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감면실적: 319.4억원

마.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2~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3년(2022~2024년)의 연평균 감면 실적: 539.4억원

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의3)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감면실적(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4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실적: 4.4억원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경농민 농지 및 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안 제6조제1항)

-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라 함
- 감면율: 50%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감면(안 제6조제2항)

- 농업용 시설은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가축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을 포함
- 감면율: 50%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892.0억원에서 2024년 943.2억원으로 변동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2]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 (안 제6조제1항)	794.4	1,028.6	820.0	670.4	871.5	837.0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등 (안 제6조제2항)	97.6	92.2	79.1	71.5	71.7	82.4
계	892.0	1,120.8	899.1	741.9	943.2	919.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감면액(919.4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3]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 감소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 (안 제6조제1항)	837.0	837.0	837.0	837.0	837.0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등 (안 제6조제2항)	82.4	82.4	82.4	82.4	82.4
계	919.4	919.4	919.4	919.4	919.4

(3) 추계결과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919.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97.0억원(연평균 91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취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취득세	−919.4	−919.4	−919.4	−919.4	−919.4	−4,597.0	−919.4
합계	−919.4	−919.4	−919.4	−919.4	−919.4	−4,597.0	−919.4

나.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

❑ (제도개요)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

-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상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안 제7조제1항)
-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7조제2항)
-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9.1억원에서 2024년 9.3억원으로 변동

- ○ 농기계 및 관정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5]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농업용 농기계(안 제7조제1항)	취득세	0.5	0.3	0.5	0.9	0.9	0.6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안 제7조제2항)	취득세	4.3	3.7	3.7	3.5	2.4	3.5
	재산세	4.3	4.6	4.8	5.3	6.0	5.0
계		9.1	8.6	9.0	9.7	9.3	9.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감면액(9.1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농업용 농기계 (안 제7조제1항)	취득세	0.6	0.6	0.6	0.6	0.6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안 제7조제2항)	취득세	3.5	3.5	3.5	3.5	3.5
	재산세	5.0	5.0	5.0	5.0	5.0
계		9.1	9.1	9.1	9.1	9.1

(3) 추계결과

❑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9.1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5.5억원(연평균 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지방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취득세	−4.1	−4.1	−4.1	−4.1	−4.1	−20.5	−4.1
재산세	−5.0	−5.0	−5.0	−5.0	−5.0	−25.0	−5.0
계	−9.1	−9.1	−9.1	−9.1	−9.1	−45.5	−9.1

다.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직후 취득한 농지 등과 영농·유통·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취득

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 임야, 양잠 및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산시설, 창고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안 제11조제1항)

- 감면율: 75%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안 제11조제2항)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2020년 393.5억원에서 2024년 302.0억원으로 변동

○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상승하였고, 재산세 감면실적 또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8]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설립 2년 이내 취득 농지·임야·시설 (안 제11조제1항)	취득세	136.0	126.6	90.2	47.6	63.5	92.8
영농·유통·가공시설 (안 제11조제2항)	취득세	209.3	206.1	150.4	125.1	163.2	170.8
	재산세	48.2	50.3	53.8	51.2	75.3	55.8
계		393.5	383.0	294.4	223.9	302.0	319.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0~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감면액(319.4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9]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설립 2년 이내 취득 농지·임야·시설 (안 제11조제1항)	취득세	92.8	92.8	92.8	92.8	92.8
영농·유통·가공시설 (안 제11조제2항)	취득세	170.8	170.8	170.8	170.8	170.8
	재산세	55.8	55.8	55.8	55.8	55.8
계		319.4	319.4	319.4	319.4	319.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3) 추계결과

❑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319.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597.0억원(연평균 31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0]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2027~2031년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취득세	−263.6	−263.6	−263.6	−263.6	−263.6	−1,318.0	−263.6
재산세	−55.8	−55.8	−55.8	−55.8	−55.8	−279.0	−55.8
계	−319.4	−319.4	−319.4	−319.4	−319.4	−1,597.0	−319.4

라.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안 제14조제1항)

- 감면율: 취득세 25%, 재산세 25%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안 제14조제3항)

- 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만 적용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산림계도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실적은 2022년 540.1억원에서 2024년 547.8억원으로 변동

○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2~202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재산세 및 조합중앙회 구매·판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은 2022~2024년 동안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표 11]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2~2024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2	2023	2024	연평균
조합중앙회 구매·판매용 부동산 (안 제14조제1항)	취득세	0.8	0.2	0.7	0.6
	재산세	4.5	4.3	5.5	4.8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안 제14조제3항)	취득세	272.4	275.6	276.3	274.8
	재산세	262.4	249.9	265.3	259.2
계		540.1	530.0	547.8	539.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2~2024년)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2022~2024년)의 연평균 감면액(539.4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12]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조합중앙회 구매·판매용 부동산 (안 제14조제1항)	취득세	0.6	0.6	0.6	0.6	0.6
	재산세	4.8	4.8	4.8	4.8	4.8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안 제14조제3항)	취득세	274.8	274.8	274.8	274.8	274.8
	재산세	259.2	259.2	259.2	259.2	259.2
계		539.4	539.4	539.4	539.4	539.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3) 추계결과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539.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2,697.0억원(연평균 53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취득세 등, 2027~2031년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취득세	−275.4	−275.4	−275.4	−275.4	−275.4	−1,377.0	−275.4
재산세	−264.0	−264.0	−264.0	−264.0	−264.0	−1,320.0	−264.0
계	−539.4	−539.4	−539.4	−539.4	−539.4	−2,697.0	−539.4

마.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의3)

(1) 제도 개요 및 감면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안 제14조의3)

- 감면율: 취득세 25%, 재산세 25%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제도연혁)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농협경제지주회사 신설(2014년) 당시 농협중앙회가 영위하던 구매·판매사업 등이 이관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면 제도가 신설된 것이나, 별도의 일몰기한 연장 없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이 종료되었다가 2024년부터 동 제도가 신설된 것임

❑ (감면실적)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2024년 4.4억원

[표 14]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4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4
농협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용 부동산 (안 제14조의3)	취득세	0.7
	재산세	3.7
계		4.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감면실적(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4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실적: 4.4억원

[표 15]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농협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용 부동산 (안 제14조의3)	취득세	0.7	0.7	0.7	0.7	0.7
	재산세	3.7	3.7	3.7	3.7	3.7
계		4.4	4.4	4.4	4.4	4.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3) 추계결과

❑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7년 4.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22.0억원(연평균 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6]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취득세 등, 2027~2031년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취득세	−0.7	−0.7	−0.7	−0.7	−0.7	−3.5	−0.7
재산세	−3.7	−3.7	−3.7	−3.7	−3.7	−18.5	−3.7
계	−4.4	−4.4	−4.4	−4.4	−4.4	−22.0	−4.4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